

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류 보완(안 제4조제1항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국내복귀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를 보다 객관적·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국내복귀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기업부설연구소 및 첨단산업등 관련 제출서류 정비(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·확충 및 첨단산업등 관련 투자에 대한 국내 복귀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
- 첨단산업등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첨단산업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기업부설연구소 투자 및 첨단산업등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계획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관련 서식 정비(별지 제1호, 제4호, 제6호, 제8호 서식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신용등급 및 첨단산업등 관련 기재항목을 추가함
- 국내사업장 신설·증설 완료신고서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항목을 추가함
- 첨부서류,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작성방법 등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심사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